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146 호 |
| 의결(보고) 년 월 일 | 2002. . . (제 회) |

| | |
|------|--|
| 의결사항 | |
|------|--|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고 성 군 수 |
| 제출년월일 | 2002. 12. 16 . |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108 |
|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8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업대책 및 정보화사업추진 정원과 기능전환관련 현장민원해결과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.

2. 주요골자

- 현장민원해결과 및 정원 : 2002.12.31에서 2004.6.30일로 연장
- 5급 1명
- 실업대책 정원 : 2002.12.31에서 2003.12.31일로 연장
- 6급 1명
- 시군정보화사업추진 정원 : 2002.12.31에서 2004.6.30일로 연장
- 6급 1명, 9급 1명

3. 참고사항

- 경남도 행정13101-12463(2002.12.04)
- 경남도 행정12220-12497(2002.12.10)
- 경남도 행정12200-12519(2002.12.12)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고,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.